

## 2025 경영위기 소상공인(저탄소화) 지원사업 공고

충청남도과 (재)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‘2045년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’ 이행에 기여하고자 「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(저탄소화)」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7월 14일

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### 1. 모집개요

○ (지원규모) 60업체

○ (지원대상) 「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따른 소상공인

-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4.12.31. 이전 소상공인
- 저탄소화 지출 증빙자료를 접수 마감일까지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

#### < 소상공인 범위 및 판단기준 >

- 소상공인 범위
  -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/ (그 밖의 업종) 상시근로자 5인 미만
- 주업종 판단기준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에 명시된 업종

#### ※ 지원 제외 대상

- 접수 마감일 현재 소상공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 -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소상공인
  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 소상공인
  - 파산·회생·면책권자 등 신용 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소상공인
  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  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 -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취소
- 아래 지원사업 수혜업체(중복지원방지)
  - 23년~2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(국비)
  - 23년~25년 충남이어家 지원사업(도비)
  - 23년~25년 (희망)재기지원사업(도비)

## 2. 지원내용

- 저탄소화 실천 소요된 비용 지급(최대 200만원 이내)
  - 2025. 1. 1. ~ 접수 당일까지 사용금액에 한하여 지원가능
  - 공급가 기준 지원
    - \* 전자세금계산서(혹은 카드 매출전표)
    - \* 카드 매출전표는 구매내역 항목이 명확한 경우
    - \* 종이 카드영수증 불인정(인쇄 내용 소실, 추후 검증 및 사후관리 문제)
    - \* 집기·비품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전표는 공고일 이후만 인정
  - 설치 및 비용 지출 완료된 건 한함
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 소상공인 자부담
- 지원분야

지원분야	세부 지원내용
집기·비품류 (업소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회용품 감축 및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집기/비품 분야</li> <li>- 전자 영수증 POS, 텀블러 및 다회용 식품용기 세척기, 리유저블 콜드컵, 친환경 포장재(인증받은 제품에 한함)</li> </ul>
시설·설비 (업소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매장 외벽 단열 공사</li> <li>● 열회수형 환기장치(실내 오염 공기 배출, 외부 공기 유입)</li> <li>●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보일러 교체</li> <li>●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(고효율 인증마크*)</li> <li>● 소규모 태양광 설비</li> <li>● 창호 교체(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)</li> <li>● 절수형 싱크대(수전, 절수페달), 절수형 변기</li> </ul>
폐기물 저감 설비 (업소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음식물 처리기, 재활용 압축기, 퇴비화 장치</li> <li>● 자동 분리 선별기(페트병에서 캡과 라벨 분리하는 설비)</li> </ul>
탄소중립 인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국가 및 국제 공인 인증 비용(탄소중립 관련)</li> </ul>

\* 고효율 인증마크 부착된 경우에 한함

### 3. 추진일정

공고 및 접수	→	선정 및 평가	→	활성화 캠페인	→	지원금 지급
7월~9월		9월		10월		10월
진흥원		진흥원		소상공인		진흥원

※ 선정된 업체는 저탄소화 활성화 캠페인 영상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음

### 4. 신청·접수

**(신청기간)** 공고일로부터 ~ 9.5.(금) 14:00까지

**(신청방법)**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[www.cnsp.or.kr](http://www.cnsp.or.kr)) 접수

**(제출서류)** ※ 제출서류 누락 등의 경우 접수불가

구분	제출서류
공통서류	[서식 1] 경영위기 소상공인 저탄소화 지원신청서
	[서식 2] 결과보고서
	[서식 3] 저탄소화 물품 설치 및 구입 비용 집행 집계표
	[서식 4] 저탄소화 물품 비용 지출 증빙
	[서식 5] 개인(기업)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
	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(법인은 법인 명의)
소상공인 확인서류	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이후 발급분)
	매출액 확인 서류(2023~2024년)
	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공고일 이후 발급분)
	지방세 납세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
가점	가점(우대사항) 확인서류
	- 충남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앱 (탄소업슈) 실천증명서
	- 충남 또는 충남 시·군 명인·명장 증서
	- 24~25년 국가 환경교육 학습플랫폼 '단짠' 교육 이수한 경우 * 기후변화·탄소중립 분야에 한함

주1) 발급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도장(또는 서명)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

주2) 글자 또는 숫자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## 5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### (평가 및 선정)

- (선정절차) 1차 정량평가(서면) → 2차 정성평가(서면)
- (1차, 정량평가) 적격여부 판단 및 서류평가 후 1.2배수 선정
  - \* 매출 상승률(20점), 고용인원(10점), 업력(10점)
- (2차, 정성평가)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류평가
  - \* 성과 적정성(25점), 지원 필요성(25점), 지속발전 가능성(10점)
- (가점사항) 최대 10점,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※공고일 이전에 한함
  - 24~25년 국가 환경교육 학습플랫폼 ‘단짠’ 환경 교육 이수한 경우
    - \* 기후변화·탄소중립 분야에 한함
  -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‘탄소업슈’ 가입 후 증명서 발급한 자
  - 충청남도 또는 충남 시군에서 발급한 명인 또는 명장 증서 보유 업체
- (선정방법) 정량평가(40점) + 정성평가(60점) + 가점 합산 고득점 순
  - \* 동점자 발생시 업력이 오래된 順
  - \*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\* 미선정 업체 중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부여

### (선정취소)

-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(서류 미비 시 평가 제외), 선정 이후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도장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
-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, 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될 수 있음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

## **(기타 유의사항)**

- 사업신청은 온라인(통합지원시스템)으로만 가능. 신청기한 이후제출 불가하오니 기한 준수
-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업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성과관리(매출 및 성과 등)에 대한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함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구매 등의 경우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, 미 보유시 환수 조치 및 최대 3년간 충남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

**(문의처)**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 콜센터

## 참고 1

## 신청 서류 발급 방법

구분	제출서류	발급방법
1	[서식 1] 지원사업 신청서	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2	[서식 2] 결과보고서	
3	[서식 3] 저탄소화 비용 집행 집계표	
4	[서식 4] 저탄소화 물품 지출 증빙	
5	[서식 5]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	
6	사업자등록증명원 - 공고일 이후 발급분	온라인발급: 홈택스 오프라인 발급: 관할 세무서
7	지방세 납세증명서 - 공고일 이후 발급분	온라인발급 : 정부24 오프라인 발급 - 시/군청,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발급
8	매출액 확인서류(2023년~2024년) (일반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	온라인 발급: 홈택스 오프라인 발급: 관할 세무서
9	가점(우대사항) 확인서류 - 충남 또는 충남 시·군 명인·명장 증서 - '탄소업슈' 실천증명서 - 24~25년 국가 환경교육 학습플랫폼 '단짠' 교육 수료증	명장인증서 실천증명서 수료증
10	고용인원 없는 경우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모바일 발급: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오프라인 발급 - 국민건강보험공단 -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
	고용인원 있는 경우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온라인 발급: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오프라인 발급 -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

※ 진흥원에서 기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

## 참고 2

#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9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**<비고>**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 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*참고 3**

**지원제외 업종(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영)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☞ 산업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※ 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